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5. 4 선고 2022가단121393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원석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 및 C이 2020. 10. 6. 공증인가 D법무법인에 「원고가 수취인 C, 액면금 4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담당변호사는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2020년 제517호로 위와 같은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21. 1. 8.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채무자인 C이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한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현주